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 최초 도입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판례·법률 등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법률상담 내용 등을 보호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비밀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실효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자신의 위법행위에 사용한 경우와 같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때에는 비밀유지권을 배제하여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실제 진실 발견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무부는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에서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       |            |     |       |                    |
|-------|------------|-----|-------|--------------------|
| 담당 부서 | 법무실<br>법무과 | 책임자 | 과 장   | 정우석 (02-2110-3175) |
|       |            | 담당자 | 검 사   | 김유완 (02-2110-3923) |
|       |            |     | 법 무 관 | 홍형석 (02-2110-3776) |
|       |            |     | 법 무 관 | 박승현 (02-2110-3172) |



**① 주요 내용**

○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보호

- 상담 내용, 이메일 등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각종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하여 국민들이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변호사로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미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해당)

○ 변호사 작성 서류·자료의 보호

- 의뢰인의 소송 등에서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소송 전략 노출이나 상대방의 무임승차 우려를 방지(미국의 '업무성과물 원칙'에 해당)

○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를 규정

-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등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낮거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등 비밀유지권을 배제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중대한 경우 등에는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

\* ①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② 범죄 등 위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어 중대한 공익을 위해 비밀유지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의뢰인과의 수임료 분쟁 등에서 변호사의 권리 주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해외 입법례**

| 국가    | 입법례                                                                    |
|-------|------------------------------------------------------------------------|
| 미국·영국 | ○ 판례법을 통해 비밀유지권 인정<br>○ 민·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야에 적용                        |
| 독일    | ○ 비밀유지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사소송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                                    |
| 프랑스   | ○ 「변호사법」에서 비밀유지권의 일반적 보호 범위를 규정<br>○ 비밀유지권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소송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 |

**③ 시행 시기**

○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

#### 4 개정안 전문

##### 변호사법 개정안 <신설>

######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